#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조경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202

발의연월일: 2025. 2. 17.

발 의 자:조경태·김예지·이헌승

서천호 · 김소희 · 유용원

우재준 • 고동진 • 서지영

송석준 의원(10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도시숲·생활숲·가로수(이하 "도시숲등"이라 함) 조성· 관리를 촉진하고 질적 향상을 위하여 모범적으로 조성·관리되고 있 는 도시숲등에 대하여 모범 도시숲등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모범 도시숲등의 인증제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품질 및 성능 등이 일정한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증명하는 일반적인 인증제도의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, 도시 환경개선 및 휴식·건강증진의 공간으로 국민들이 선호하는 도시숲의 확대와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.

이에 모범 도시숲등의 인증제도를 폐지하는 한편, 우수 도시숲등을 선정하여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포상 등 지원시책을 마련함으로써 도 시숲등을 확대하여 국민의 보건·휴양 증진 및 정서 함양에 기여하려 는 것임(안 제18조 등).

#### 법률 제 호

#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6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4. 제18조에 따른 우수 도시숲등의 선정에 관한 사항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- 제18조(우수 도시숲등의 선정 등) ① 산림청장은 도시숲등의 조성·관리를 촉진하고 질적 향상을 위하여 우수하게 조성·관리되고 있는 도시숲등을 선정하고 포상하는 등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우수 도시숲등의 선정 방법 및 절차, 지원시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23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.

제24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모범 도시숲등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증된 모범 도시숲등은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우

수 도시숲등으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.

## 신 • 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아 정 제16조(도시숲지원센터의 지정・ 제16조(도시숲지원센터의 지정・ 운영 등) ① (생 략) 운영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도시숲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 1. ~ 3. (생략)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제18조에 따른 모범 도시숲 4. 제18조에 따른 우수 도시숲 등의 인증에 관한 사항(산림 등의 선정에 관한 사항 청장이 지정하는 도시숲지원 센터에 한정한다) 5. ~ 7. (생략) 5. ~ 7. (현행과 같음) ③·④ (생 략) ③ • ④ (현행과 같음) 제18조(모범 도시숲등의 인증) ① | 제18조(우수 도시숲등의 선정 등) ① 산림청장은 도시숲등의 조 산림청장은 도시숲등의 조성ㆍ 관리를 촉진하고 질적 향상을 성 · 관리를 촉진하고 질적 향 상을 위하여 우수하게 조성ㆍ 위하여 모범적으로 조성・관리 되고 있는 도시숲등에 대하여 관리되고 있는 도시숲등을 선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모범 도 정하고 포상하는 등 지원시책 시숲등으로 인증할 수 있다. 을 마련할 수 있다.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 ② 제1항에 따른 우수 도시숲 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 등의 선정 방법 및 절차, 지원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시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 령령으로 정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

- 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<u>5</u> 년으로 한다.
- ④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농림축산식품부렁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 면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.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
-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
- 2.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경우
- ⑤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명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
- 2.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
- 3.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

내에 도시숲등 인증업무를 시 작하지 아니하거나, 1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

⑥ 제1항,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인증 기준, 절차 및 취소와 인증기관의 지정·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.

제23조(청문) 산림청장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 하여야 한다.

- 1. (생략)
- 2. 제18조제4항에 따른 모범 도 시숲등의 인증 취소
- 3. 제18조제5항에 따른 모범 도 시숲등 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제24조(보고 및 검사) ① 산림청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숲등의 조성·관리를 위하 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에게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하 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 게 할 수 있으며, 소속 공무원

제23조(청문)	
1. (현행과 같음) <u>&lt;삭 제&gt;</u>	
<u>&lt;삭 제&gt;</u>	
제24조(보고 및 검사) ( 	D

으로 하여금 관련 사업에 관하 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.

- 1. ~ 3. (생 략)
- <u>4. 제18조제1항에 따른 도시숲</u> <u><삭 제></u> 등에 대한 인증기관의 장
- ② (생 략)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